

취 득 및 처 분 재 산 현 황

☐ 원미구 역곡1동 사무소 신축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5-2
- 면 적 : 991.4㎡(300평)
- 건축규모 : 지하1층 및 지상2층
- 건축연면적 : 990㎡(300평)
- 예산액 : 690,000천원
- 신축사유

현 청사는 역곡역 전철선로와 10M 인접하여 전철 소음으로 민원인과 대화나 전화통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95 완공 예정인 경인전철북북선 계획으로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5M로 근접되면 소음이 가중되어 동사무소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.

☐ 현청사(역곡1동)처분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12-14
- 면 적 : 485.6㎡(147평)
- 건축연면적 : 519.6㎡(157평)
- 건축년도 : 1983년
- 처분사유 : 일반 상업지구 및 역곡 전철역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매각 시 건축에 따른 예산 확보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.
 - 신 축 비 : 2,300원 × 300평 = 690,000천원
 - 매각예상액 : 5,000원 × 157평 = 785,000천원
 - 차 액 : 95,000천원

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

☐ 심사결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3. 11. 24

다. 상정일자 : 93. 11. 26

라. 의결일자 : 93. 11. 27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

나. 내 용 :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,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제정한바 있으나, 89. 12. 30 법률 제4175호로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항 삭제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3. 질의 답변요지 : 없음

4. 찬반토론 : 없음

5. 소수의견 : 없음

☐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219
의 결	93. 12. 6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사유

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제정한바 있으나 89. 12. 30 법률 제4175호로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항 삭제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○ 시 행 일 : 공포한 날부터

☐ 관련근거

89. 12. 30 법률 제4175호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에 의거 같은 법 제65조 규정 삭제

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의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부천시도시계획사업수의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도시계획변경(재정비)결정안심사보고

☐ 심사결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3. 11. 24

다. 상정일자 : 93. 11. 26

라. 의결일자 : 93. 11. 29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

나. 내 용 :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,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코자 함.

— 도시계획구역 변경 : 52.15km → 52.18km

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

— 용도구역 지정 : 상세계획구역 (4개 역세권구역)

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

3. 의견청취 요지

가. 답변자 : 도시계획국장

나. 내 용 : 별지의견서와 같음

☐ 심사결과 : 의견서 채택